KangNam
Labor Law Firm
A-1501 406, Teheran-ro, Gangnam-gu, Seoul, 06192, Republic of Korea
TEL: 02-539-0098
FAX: 02-539-4167
http://www.k-labor.com

휴 직

개 요

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휴직에 관한 규정은 ○○그룹의 기회균등 정책에 따라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보유를 목적으로 실시된다. 그러므로 회사는 직원들의 휴직신청시 합당한 사유에 대하여, 최고 2 년까지, 직무로부터 연장된 휴가의 형태로 고려되어 결정된다. 휴직은 경영진의 결정에 의해 무급으로 실시된다.

휴직의 정의와 조건

- 휴직은 장기무급휴가에 해당한다.

- 휴직기간동안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나, 특별한 조건이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, 대게 휴직이 일어나는 시점으로부터 고용조건과 복리후생의 요건등이 일시적으로 변동하여 정지된다.

신청자격, 휴직기간, 자격요건

- 일반적으로 3 년이하의 근무경력을 가진 직원은 휴직을 신청할 수 없다

- 휴직은 장기적으로 회사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직원들의 뛰어난 기술과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기 위하여 실시된다. 그러므로, 경영진은 해당 직원의 복직후 적합한 업무수행 능력과 경험, 기술등의 수준과 인사고과 점수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휴직을 결정 한다.

- 휴직은 경영진에의해 결정되며, 보통 최고 2 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 년 미만이 된다.

- 이하에 규정된 다양한 이유로 휴직신청을 할 수 있다.

  - 산후휴가 이후, 별도로 연장한 휴직 기간
  - 가족을 돌보기위한 경우
    예) 육아
  - 자선단체 활동에 참가한 경우
  - 정규교육을 받기위한 경우

휴직의 효과

- 휴직기간은 취업규칙 제 31 조

3 항에 의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연수에 포함된다.

- 모든 종류의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된다
- 휴직기간중에는 연,월차 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.

복 직

- 휴직중인 직원이 복직하기위해서는 적어도 1 달전에 인사부에 복직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.
- 해당 직원은 휴직전의 직무와 비슷한 적당한 직무와 본인의 등급으로 복귀할 권리가 있다.
- 만약, 그와 같은 직무가 불가능할 경우, 휴직이 연장되거나 또는 회사는 당해 직원에 적당한 직무를 계속 찾는다.
- 만약 당해 직원이 복직을 원치 않을 경우, 휴직이 끝나기 1 달 전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.
- 직원이 적당한 직무를 찾지못한 경우, 회사는 휴직이 끝날때 혹은 사전에 당해 직원이 복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 직원과의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. 이러한 상황에서 당해 직원은 고용관계 종료에 따른 어떤 종류의 보상도 받지 못한다.

기타, 이 규정에 언급하지 않은 것은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○○ 그룹의 휴직규정에 의해 이루어 진다.

이 정책은 20xx 년 1 월 1 일부터 유효하며, 국내 다른 경쟁업체들이나 국내 시장 상황에 비추어 경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재검토 된다.